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11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3.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3. 7. 17. 접수 제7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4. 4. 'B은 원고에게 226,893,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0.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은 2023. 6. 14.경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해당 부동산은 2023. 11. 15. 합병으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1.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고, B, D, E, F, G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하여 살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B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별다른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1/6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재준

별지

C가 사망한 일자일 뿐이고,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일자는 2023.

7.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착오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